

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〉

- 『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』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- 우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『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』과 관련하여, '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'21년 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'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'21.5.31.자로 마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,
 - '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'21.5.31.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우편 신청의 경우, 신청종료일('21.5.31. 18시)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
 - ↳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의 경우도 동일('21.5.31. 18시까지)
 - ** '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(9만명)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既 안내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-522호, 2020.12.21.)
- 신규 지원신청은 '21.5.31.자로 마감되지만,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인 바,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『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』은 '17년부터 '21년까지 한시(限時)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에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『청년고용 활성화 대책('21.3.3)』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『특별고용촉진장려금』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(5만→11만명 확대)**
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(월 최대 180만원, 최대 6개월)

☞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 사업 안내 참고

◆ **특별고용촉진장려금(2만명 신규 지원)**
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(월 최대 100만원, 최대 6개월)

☞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/공지사항)과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/기업혜택안내) 사업 안내 참고
